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21050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9. 3.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,

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가.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03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나. 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

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제87조·제87조의2·제87조의5·제88조의2”를 “제87조·제88조의2”로, “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”을 “제91조의25·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에 따른 저축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의2 중 “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0조·제100조·제140조”를 “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·제14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과세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비과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제4조(비과세) ----- ----- -----.
1. ~ 3의3. (생략)	1. ~ 3의3. (현행과 같음)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6조의3 · 제86조의4 · 제87조 · 제87조의2 · 제87조의5 · 제88조의2 · 제88조의4 · 제88조의5 · 제91조의14,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,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	4. ----- 제87조 · 제88조의2----- ----- ----- 제91조의25 · 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에 따른 저축 지원----- -----
4의2. ~ 11. (생략)	4의2. ~ 11. (현행과 같음)
11의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0조 · 제100조 · 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	11의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 · 제140조 ----- -----
11의3. ~ 12. (생략)	11의3. ~ 12. (현행과 같음)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수입 : 13억원

구 분 \ 연 도		(단위: 억원)					
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지출			해	당	없	음	
	소 계(A)						
수입	생산적금융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농특세 비과세(\$4)		추	정	곤	란	
	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특세 비과세 대상 정비(\$4)	1	2	3	4	4	13
	소 계(B)	1	2	3	4	4	13
총 비용(A-B)		△1	△2	△3	△4	△4	△1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제4조 (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농특세 비과세)	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농특세를 비과세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
2	제4조 (농어가목돈마련 저축 등 농특세 비과세 대상 정비)	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, 공공차관 과세특례 등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정비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4조 (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농특세 비과세)	×	가입자 수, 납입 규모, 가입자의 소득 수준, 투자 수익 및 계좌 해지 시점*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* 계좌 해지 시점에 소득을 정산·신고하므로, 세수효과는 계좌 만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'29년 이후 발생
2	제4조 (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특세 비과세 대상 정비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, 개정 법률안이 '26.12월 중에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특세 비과세 대상 정비(§4)

○ 세수증 : 13억원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(조특법 §87의2)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 (5년간 133억원) 및 농특세 세율(10%) 반영
- 공공차관 조세특례(조특법 §20)의 경우 최근 5년간 조세지출 없음

②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(§4)

○ 세수감 : 추정곤란

- 가입자 수, 납입 규모, 가입자의 소득 수준, 투자 수익 및 계좌 해지 시점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

IV. 부대의견

○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○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국장
송재희	정현엽	박은영	박홍기

○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엽	044-215-4232	potear02@korea.kr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

I. 항목별 재원조달방안

☐ 해당없음

〈항목별 재원조달방안〉

(단위: 억원 또는 백만원)

구 분 연 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○ 조세수입·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·차입						
○ 회계·기금 간 전입						
○ 기존 예산·기금의 항목 간 조정						
○ 기타						
〈합 계〉						

II. 부문별 재원조달방안

☐ 해당없음

〈부문별 재원조달방안〉

(단위: 억원 또는 백만원)

구 분 연 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☐ 중앙정부						
○ 일반회계						
○ ○○특별회계						
〈 합 계 〉						

Ⅲ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1.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○ 해당없음

Ⅳ. 부대의견

○ 해당없음

Ⅴ. 협의사항

협의시점	협의기관	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
26년 7~8월	기획예산처	세입예산안에 반영

Ⅵ. 작성자

○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국장
송재희	정현엽	박은영	박홍기

○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엽	044-215-4232	potear02@korea.kr